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건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 22) 상정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 2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강 성 모)

가. 제안이유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건물(구 원미구 보건소)은 2006. 10. 1부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 2. 9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되던 공유재산 사용·대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07. 1. 1부터 부과됨에 따라
- 시설관리공단 사옥에 대해 무상 사용토록 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재산의 표시			목적 및 용도	2007년 사용료	부 가 가치세액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m ²)				
계				85,018,540원	8,501,850원	
원 미 구 심곡동 181	건 물	1,576.4	사무실	18,059,790원	1,805,980원	
	토 지 (체비지)	1,164.5	대지및 주차장	66,958,750원	6,695,870원	

- 건축년도 : 1985년(철골철근콘크리트)
- 규 모 : 지하1층, 지상 4층
- 대 지 : 1,164.5m²
 - ※ 도시개발과 소관 체비지
- 현 사용기관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 사용료부과 총액 : 85,018,540원
 - 건 물 : 18,059,790원
 - 토 지 : 66,958,750원
-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액 : 8,501,850원
 - 산출근거 : 85,018,540원(사용료) × 10/100 = 8,501,850원
- 무상사용 추진 배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06. 2. 9 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되던 공유재산 사용·대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07. 1. 1 부터 부과됨에 따라
 -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옥(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예산절감(8,500천원)에 기여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금년에 반영된 예산의 조치는?	○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겠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시와 부과 시기는?	○ 2006. 2. 9자로 개정 되었으며, 부과 시기는 2007. 1. 1자가 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건물)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74
의결 년월일	2007.1.23

제안년월일 : 2007년 1월 9 일

제안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건물(구 원미구 보건소)은 2006. 10. 1부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 2. 9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되던 공유재산 사용·대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07. 1. 1부터 부과됨에 따라
- 시설관리공단 사육에 대해 무상 사용토록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공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목적 및 용도	2007년 사용료	부 가 가치세액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m ²)				
계				85,018,540원	8,501,850원	
원미구 심곡동 181	건물	1,576.4	사무실	18,059,790원	1,805,980원	
	토지 (체비지)	1,164.5	대지및 주차장	66,958,750원	6,695,870원	

- 건축년도 : 1985년(철골철근콘크리트)
- 규 모 : 지하1층, 지상 4층
- 대 지 : 1,164.5m²
※ 도시개발과 소관 체비지
- 현 사용기관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 사용료 부과 및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액

○ 사용료부과 총액 : 85,018,540원

• 건 물 : 18,059,790원

• 토 지 : 66,958,750원

○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액 : 8,501,850원

※ 산출근거 : 85,018,540원(사용료) × 10/100 = 8,501,850원

□ 무상사용허가 추진 배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06. 2. 9 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되던 공유재산 사용·대부(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07. 1. 1 부터 부과됨에 따라

○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옥(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토록하여 예산절감(8,500천원)에 기여하고자 함

□ 동의요구 내용

○ 공유재산인 시설관리공단 사용 건물에 대해 부천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단, 토지(체비지)는 부천시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 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
 -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